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제보조비 지급 근거 마련 등〉

■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629, 2201634, 2201638, 2201639, 2201641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II. 검토의견	9
1.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	9
2. 장제보조비 지급 근거 마련	15
3. 장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23
4. 생계지원금 지급 연령 제한 폐지	29
※ 참고자료	34

I.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최은석의원 등 15인
- 2) 제안일 : 2024. 7. 11.
- 3) 회부일 : 2024. 7.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행법 제6조의3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그 대상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80세 미만의 분들에게는 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연령 제한 내용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한편,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한편, 현재 현행법 제8조의7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

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참전유공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제2항 신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최은석의원 등 15인
- 2) 제안일 : 2024. 7. 11.
- 3) 회부일 : 2024. 7.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는 반면, 독립유공자

와 그 유족 등에 관해서는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하고자 함(안 제26조의3 신설).

한편, 현재 현행법 제19조의4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신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최은석의원 등 15인
- 2) 제안일 : 2024. 7. 11.
- 3) 회부일 : 2024. 7.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관해서는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8조의3 신설).

한편, 현재 현행법 제44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2항 신설).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최은석의원 등 15인
- 2) 제안일 : 2024. 7. 11.
- 3) 회부일 : 2024. 7.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 대하여도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6).

또한,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7).

한편, 현재 현행법 제53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 신설).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최은석의원 등 15인
- 2) 제안일 : 2024. 7. 11.
- 3) 회부일 : 2024. 7.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행법 제75조의2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그 대상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80세 미만의 분들에게는 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연령 제한 내용을 삭제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한편,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또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도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한편,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4 신설).

한편, 현재 현행법 제36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

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2항 신설).

II. 검토의견

1.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개정안¹⁾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83조(위임 및 위탁) ① (생략)	제83조(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 7제1항에 따른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정부안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74조(위임 및 위탁) ① (생략)	제74조(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정부안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u><신설></u>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74조(위임 및 위탁) ① (생략)	제74조(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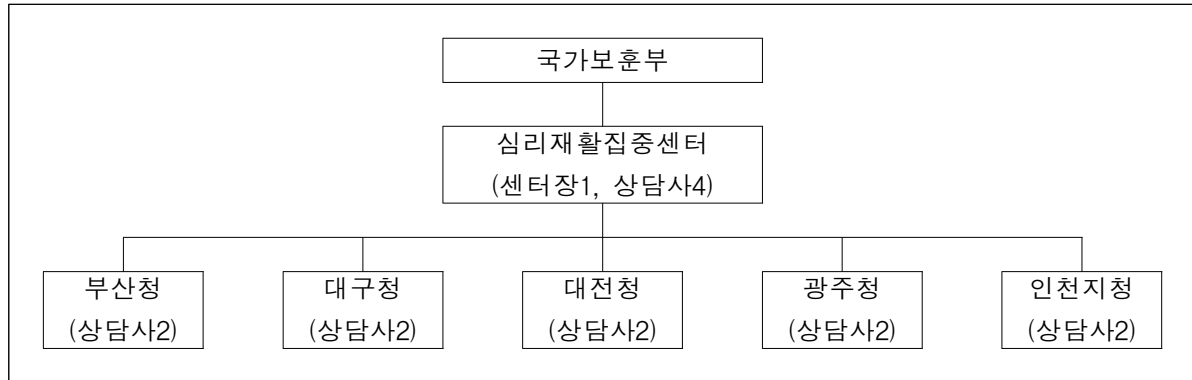
<u><신 설></u> <u>② (생 략)</u>	<u>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u> <u>③ (현행 제2항과 같음)</u>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81조(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u><신 설></u> <u>② (생 략)</u>	제81조(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u>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u> <u>③ (현행 제2항과 같음)</u>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위하여 심리검사, 상담, 프로그램 지원 등의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재활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²⁾ 202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심리적 재활 등)

년도에는 1,841명에 대하여 심리검사, 감정조절, 트라우마 회복, 대인관계 등 총 9,012건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음.

<심리재활센터 운영 체계>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심리재활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심도수준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보훈부는 2018년 7월부터 심리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사 15명(서울 5명), 부산, 대전, 대구, 광주청, 인천지청 각 2명)을 5개 지(방)청에 배치하고 있음.

3) <심리재활서비스 분류기준> (보훈가족심리재활보고서, 2003)

위험군	수준	검사지 점수	치료계획
고위험군	심도 수준	‘총점 70점 이상’ 또는 ‘모든 하위 척도 65점 이상’	· 병원연계 · 약물 치료 · 입원 치료
	중등도 수준	‘총점 65~69점’ 또는 ‘모든 하위 척도가 60점 이상’	· 개인/ 집단 심리치료 · 장기노출요법(PE) · 안구운동 둔감화 재처리법(EMDR) · 내러티브 치료
저위험군	경도 수준	‘총점 55~64점’ 또는 ‘하나 이상의 하위 척도가 60점 이상’	· 개인/ 집단 심리치료 · 심리교육 · 예술/오락프로그램 · 자조모임 지원
	잠재 수준	경도 수준 미만	· 재발방지 프로그램 · 사례 관리 · Self-care program 제공

<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심리재활서비스 현황>

구분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재활서비스
명칭	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국가보훈부 마음나눔터
운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부 직접 운영
위치	보훈병원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보훈관서 (서울-임대, 지방-보훈관서)
기능	약물치료	심리검사, 상담, 집단 프로그램
인원	10명 (서울 5명, 부산 2명, 그 외 1명)	15명 (서울 5명, 지방 2명씩)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심리재활센터는 국가보훈부가 직접 운영하는 반면 보훈병원의 운영주체는 공단으로, 심리재활센터와 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운영 주체가 달라 상호 간에 내담자 또는 환자의 정보 공유 및 진료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심리재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여 기존 심리검사 및 상담과 의료가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수준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각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대상자 지원 관련 법률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학적 재

활사업의 경우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⁴⁾ 고용노동부 등에서도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타 부처 심리재활센터 운영 현황>

구분	국가트라우마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광주트라우마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운영 방식	직영(국립정신건강센터)	위탁(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영(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상	재난 및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	중대산업사고 등 충격적 사고를 경험한 근로자 등	5·18민주화운동 등 고문 국가폭력 생존자 및 유가족
직무	◦ 심리지원 지침 개발·보급 ◦ 트라우마 환자 심리평가, 상담 및 치료 ◦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 심리지원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등	◦ 직·간접사고 피해자의 심리안정화 ◦ PTSD 예방 ◦ 일상 직장생활 복귀도모 ◦ 사고 충격에 따른 심리안정 지속관리 ◦ 필요시 전문치료 연계	◦ 트라우마 치유·재활 및 사회적응 지원 ◦ 트라우마 치유·재활에 관한 연구·개발 ◦ 트라우마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자료: 국가보훈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학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사업을 위탁받은 공단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타 부처 심리재활 지원기관의 대부분이 민간의료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고 있으며, 공단 위탁 시 치료, 신체재활, 심리재활을 연계한 종합적인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⁵⁾

2. 장제보조비 지급 근거 마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개정안⁶⁾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사망 시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8조의4(장제보조비 지원 등) 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 국가보훈부는 '24년 하반기부터 보훈관서에 있는 심리재활센터를 보훈병원으로 이전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법 개정 시 공단 내 별도 조직으로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힘.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u>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u>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정 부 안
<신 설>	<u>제26조의3(장제보조비 지원 등)</u> <u>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u>

	<u>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u>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54조의6(장제보조비 지원 등)</u> <u>①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5조의4(장제보조비 지원 등) ①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u>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u>
--	---

□ 현재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20만원)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음.

□ 그러나,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관련 법⁸⁾에서 장제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묘지에의 안장)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장제보조비)

①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장제보조비의 지급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이에 각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하는 경우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등이 사망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과 관계없이 사망일 시금⁹⁾을 유족 등에게 지급(112.7만원~326.8만원)하고 있는데,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고, 장제보조비(20만원)만 지급되고 있음.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사망일시금)

①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3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사망일시금) ①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사망일시금) ① 보상금을 받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2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사망일시금 및 장제보조비 비교>

구분	사망일시금	장제보조비
지급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지급대상	○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유족이 사망한 경우(보상금승계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참전유공자
지급금액	○ 112만 7천원 ~ 326만 8천원	○ 20만원 ※ 15만원('00~'13.), 20만원('14~현재)
지급성격	○ 보상금 종결 급부 및 장제 보조적 성격	○ 유공자 사망 시 예우 및 장제 보조적 성격

자료: 국가보훈부

○ 사망일시금은 장제 보조 및 보상금 종결 급부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사망일시금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은 이미 장례비 보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중복 지원이 문제될 수 있음.

□ 또한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제보조비는 국립묘지 등에 안장될 경우 지급되지 않는¹⁰⁾ 반면, 사망일시금은 국립묘지 안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례 관련 지원이 참전유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개정안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장제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약 12억 2,000만원, 5년간 6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개정안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국가유공자 (유족)	사망인원(명)	5,025	5,025	5,025	5,025	5,025
	단가(천원)	200	200	200	200	200
	소요예산(백만원)	1,005	1,005	1,005	1,005	1,005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인원(명)	808	808	808	808	808
	단가(천원)	200	200	200	200	200
	소요예산(백만원)	162	162	162	162	162
보훈보상대상자	사망인원(명)	168	168	168	168	168
	단가(천원)	200	200	200	200	200
	소요예산(백만원)	34	34	34	34	34
특수임무유공자	사망인원(명)	95	95	95	95	95
	단가(천원)	200	200	200	200	200
	소요예산(백만원)	19	19	19	19	19
계	사망인원(명)	6,096	6,096	6,096	6,096	6,096
	단가(천원)	200	200	200	200	200
	소요예산(백만원)	1,220	1,220	1,220	1,220	1,220

자료: 국가보훈부

제9조(묘지에의 안장)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장제보조비까지 지급할 경우 장제 관련 지원비가 중복지급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장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7 신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4조의7(장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보훈보상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u>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u>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¹¹⁾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¹²⁾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¹³⁾하고 있음.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2)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68조의3(장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지원목적	○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 시 장례지원을 통해 보훈대상자로서 마지막 품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고인의 명예와 유족의 자긍심 고취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에 해당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사람
지원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3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3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의3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지원사항	○ 장례지도사 등 인력 및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장의차량 등 장례(상조) 서비스 등
지원절차	① 장례서비스 신청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 ⇒ ② 상조업체에 장례지원요청 (보훈관서) ⇒ ③ 장례서비스 지원 (상조업체) ⇒ ④ 비용청구 및 지급 (상조업체/예우정책과)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 자료 재구성

□ 그러나,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현행법에서 장례서비스 제공 근거
를 두고 있지 않아,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최근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계곤란 및 무연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명예를 지키고, 사후에도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국가보훈부 추산에 의하면 개정안에 따른 예산소요는 연간 약 3,520만원¹⁴⁾으로, 어렵게 삶을 마무리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국가가 존경과 예우를 표하려는 취지를 감안할 때, 무리한 수준의 재정적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¹⁵⁾은 장례 서비스 지원 근거와 함께 장례서비스 제공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 요청 근거¹⁶⁾를 규정하고 있는데, 장례서비스 제공 사무

14) 장례지원비 : 16명*×220만원=3,520만원

* 2024년 생계곤란 보훈보상대상자 인원(204명) 중 3년 평균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대비 지원율(8%) 적용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3의2.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례와 같이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
 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 6의2. 제42조제7항에 따른 진료비용 중 약제비용의 지급
 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
 8. 제56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
 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 11의2. 제68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
(이하 생략)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0의3. 제89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0의3. 제75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사망원인통계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7의2. 제8조의7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의2. 제8조의8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illegible]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장례 서비스 제공 대상을 보훈보상대상자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가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사후 예우를 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생계지원금 지급 연령 제한 폐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각 개정안은 현재 8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생계지원금 수급 자격을 나이에 관계 없이 전 연령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75조의2(생계지원금) ① <u>8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2. (생 략) ② ~ ⑥ (생 략)	제75조의2(생계지원금)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생계지원금) ① <u>80세 이상</u> 의 <u>참전유공자</u> 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6조의3(생계지원금) ① <u>참전유공자</u>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현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생계가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¹⁷⁾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80세 이상으로 가구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에게는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음.

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생계지원금) ① 8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수임무유공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생계지원금) ①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생계지원금 지급 제도 개요>

구분	내 용
사업내용	○ 생계가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수당 지급
지원대상	○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참전유공자 본인 중 80세 이상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지원근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지급액	○ 월 10만원
지원현황	○ 6,769명 지원 ('24.6월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 자료 재구성

□ 그러나 생계지원금 수급 자격을 8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80세 미만의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과 참전유공자가 생계지원금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임.

<생계지원금 대상 연령별 현황>

구 분	계	64세이하	65~69세	70~79세	80~89세	90세이상
6·25참전	33,499	-	-	-	6,321	27,178
월남참전	89,452	-	6	75,619	13,607	220
고엽제후유의증	49,489	-	5	41,047	8,113	324
특수임무유공자	2,582	1,460	359	377	311	75
5·18민주유공자	4,481	2,149	1,154	781	343	54
합계	130,014	3,609	1,519	76,777	20,582	27,527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개정안은 연령 제한 없이 생계가 곤란한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과 참전유공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 생계지원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공자에게 연령과 관계 없이 지원하는 것이 동 제도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연간 약 30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인 5·18민주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도 생계지원금 연령 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경우 재정 소요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른 소요예산>

구 분	대상인원 (명)	적용 비율	지급인원 (명)	단가 (만원)	소요예산 (백만원)
참전유공자	75,623	33.1%	25,031	10	30,037
특수임무유공자	2,199	13.8%	303	10	363
총계	77,822		25,334		30,400

* (대상인원) '23.1월 기준 80세 미만 인원내 대상별 증감률('22-'23) 적용

* (적용비율) 대상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비율 적용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현행 생계지원금 제도의 연령 요건이 저소득층 생계지원 정책의 효과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연령 제한을 폐지할 필요성은 있으나,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 수급 연령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07

참고

심리재활서비스 사업 개요

□ 개요

- (목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대상 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 지원
- (도입) 2018년 7월부터 상담사 15명이 6개 보훈관서에 배치되어 업무 시작

구 분	심리재활 집중센터	부산청	대전청	대구청	광주청	인천지청
장소	서울 여의도	부산청 3층	대전청 4층	대구청 2층	광주청 1층	인천지청 1층
	KT빌딩 8층	마음나눔터	마음나눔터	마음나눔터	마음나눔터	마음나눔터
전문상담사	5명	2명	2명	2명	2명	2명

- (대상) 국가보훈대상자(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본인 및 유가족)

(본인,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유공자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단기복무 포함)

- ('24년 예산) 2,110백만원(인건비 720, 운영비 442, 센터 이전비 948)

□ 세부 운영내용

구분		내용	시기
개인 프로그램		• 우울, 불안 등 심리 문제에 대한 1:1 상담 / 심리검사	상시
집단 프로그램	일반	• 힐링 프로그램 - 음악·명상·미술·아로마테라피 등 소규모 집단프로그램	상시
	심화 (심층)	•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 • 노년층 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 "삶의 의미 찾기" • 사별 및 애도 프로그램	상시
	특성화 (특별)	• 산림치유프로그램(힐링캠프): 2박 3일 가족 동반 캠프 (산림청 협업)	연 2회
정신건강교육		• 마음건강회복 프로그램 : 특강, 수면, 스트레스 관리	상시
이동상담		• 찾아가는 심리상담 : 보훈회관·병원 등에 상담사 직접 방문	월 1~2회

□ 사업실적

연도	추진 실적
'18년	실인원 622명에 대한 심리검사 및 프로그램 1,134건 지원 천안함 생존장병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 의향조사 및 서비스 연계
'19년	실인원 1,417명 에 대한 심리검사 및 프로그램 7,803건 지원 강원도 고성 산불피해 보훈가족(18명) / 청해부대 사고 유족 긴급 심리지원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전문가를 활용한 음악·미술, 원예 등 집단프로그램 운영
'20년	실인원 1,482명 에 대한 심리검사 및 프로그램 7,834건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원격화상 상담서비스 운영 보훈처-산림청 힐링캠프 업무협약(12월) / 취약가구 대상 가족여행 프로그램 지원
'21년	실인원 1,564명 에 대한 심리검사 및 프로그램 8,853건 지원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령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21.10월 시행) 심리적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106명) / 국가유공자 힐링캠프(3회, 80명)
'22년	실인원 1,793명 에 대한 심리검사 및 프로그램 8,982건 지원 국가유공자 힐링캠프 확대(11회, 273명) / 정서지원(AI) 로봇'파이보' 도입(전국 90대) 연구용역 결과, 노년층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삶의 의미찾기) 개발·시범운영
'23년	실인원 1,841명 에 대한 심리검사 및 프로그램 9,012건 지원 국가유공자 힐링캠프 확대(12회, 243명) / 노년층 맞춤형 프로그램(다시, 인생) 전국 시행 (5개센터 73명) 심리재활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종합만족도 91.8%)

□ 사업효과

구분	분노	불면증	신체화	우울	대인관계	재경험
사전	50.39	53.74	50.85	53.56	55.40	52.98
사후	46.45	46.68	47.02	46.71	50.28	47.69
증감	△3.94	△7.06	△3.83	△6.85	△5.12	△5.29

※ 심리 재활 프로그램 사후 전반적인 심리지수 개선 효과 ('23년 자체 성과보고서 기준)

□ 향후 발전방안

- 보훈병원을 거점으로 권역별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가칭)' 운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의료·재활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보훈공단(보훈 병원)에 업무를 위탁하여 진료와 상담 연계로 서비스 수준 제고

<심리재활서비스 발전 계획(안)>

구분	현 행	개 선
개념	심리상담 등 지원 서비스	정신건강 지원 전담 기구
운영	직접 수행	민간위탁(보훈공단)
위치	보훈관서	보훈병원
기능	<u><심리검사·상담 등에 한정></u>	<u><심리검사·상담, 의료연계, 연구, 교육 등 정신건강 종합 케어></u>
인원	15명 (서울 5명, 지방 2명씩)	15명 → 52명 (서울 24명, 지방 각 5~6명) *단계적 확대 추진

(자료: 국가보훈부)